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오알스 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HW/SW도입
- 발주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EMC VNX5300)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자(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일금 사천구백만원(49,000,000원 이하)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4년 10월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

